

# 산림조합정관(예) 일부개정정관

2021. 01. 01.



# 산림조합정관(예) 일부개정정관(안)

## 1. 개정이유

「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」(법률 제17007호, 2020. 2. 18. 공포, 2021. 1. 1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일부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합(전문조합 포함)의 사업 승인 및 정관 변경의 승인에 대한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·도지사로 변경(제5조, 제7조)
- 나. 조합의 감독과 지도에 대한 명령권자 및 해당 법 조항을 구분하고,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·도지사로 변경(제12조)
- 다. 총회의 의결취소 청구, 집행정지, 설립인가 취소 등에 대한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·도지사로 변경(제48조, 제49조, 제82조)

## 산림조합정관(예) 일부개정정관안

산림조합정관(예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지역조합의 사업>

제5조제1항제12호 중 “중앙회장”을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<전문조합의 사업>

제5조제1항제8호 중 “중앙회장”을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조항 중 “산림청장”을 각각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감독과 지도) 본조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행해야 한다.

1. 법 제117조, 제121조 및 제126조에 따른 중앙회장의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지시
2. 법 제123조부터 제127조에 따른 시·도지사의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지시
3. 법 제12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령

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산림청장”을 각각 “시·도지사”로, 같은 항 중 “청구하여야”를 “청구해야”로 한다.

제49조 중 “산림청장으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, “보고하여야”를 “보고해야”로 한다.

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산림청장”을 각각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업) ① 본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.</p> <p>1. ~ 11. (생 략)</p> <p>12.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<u>중앙회장</u>의 승인을 받은 사업</p> <p>② ~ ⑦ (생 략)</p>	<p>제5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----- ----- <u>시·도지사</u> -----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사업) ① 본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<u>중앙회장</u>의 승인을 받은 사업</p> <p>② ~ ⑦ (생 략)</p>	<p>제5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 <u>시·도지사</u> -----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정관의 변경) ① 본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<u>산림청장</u>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산림청장이 정하는 정관”예”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<u>산림청장</u>의 인가를 받</p>	<p>제7조(정관의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<u>시·도지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----- <u>시·도지사</u>-----</p>



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100분의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.

제49조(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) 법 제124조에 따라 산립청장으로부터 총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집행정지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2조(해산) ① 본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산립청장의 설립인가 취소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산은 산립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청구해야 -----  
--.

제49조(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) -----  
----- 시·도지사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보고해야 -----  
--.

제82조(해산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해야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시·도지사-----

② -----  
----- 시·도지사-----  
-----  
-----.